

1. 개정 이유

그간 「철도안전법」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두고 있음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여객에 대한 안내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여객은 정확하게 무엇이 금지행위인지 알기가 어려웠음에도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를 받아왔음. 따라서, 철도운영자에게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여객에게 안내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안내방법과 안내시기 등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철도차량의 선로위치 변경, 연결, 분리 등을 통해 화물열차를 조성하는 입환작업이 종래는 기관사가 열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사망사고를 비롯한 직무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고예방을 위해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의 원격제어 입환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한 기관차를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가 그 기관차를 원격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이에 대한 실무수습 기준 등을 정하고,

그 밖에 적성검사에 신형검사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규칙에는 구형검사에 따른 검사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용어의 쓰임과 해석 등에서 혼동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던 바,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자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안내 시 세부적인 안내시기·방법 등을 정함(안 제80조의2)

1) 철도운영자가 여객열차에서 안내하는 경우에는 열차 출발 전 또는 운행 중에 영상 또는 음성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열차 내부에 게시물의 형태로 안내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2) 철도는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 다양한 운행방식, 열차유형 등이 있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안내횟수, 안내시기, 안내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다양한 운행환경에 대응하고자 함

나. 철도장비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에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동력차 포함시킴(안 별표1의2)

다. 적성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기준 개정(안 별표5)

철도차량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과 관련한 적성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가운데 장비기준을 신형 적성검사에 맞게 개정함
라. 무선제어 입환동력차 실무수습기준 추가 및 일부 오류수정(안 별표11)
철도장비 운전면허 실무수습 교육시간에 무선입환 동력차의 경우는 20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일부 오류사항을 수정

마. 운전업무종사자의 불합격기준 중 불필요 기준 삭제(안 별표13)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자에 대한 특별검사 불합격기준 중 불필요한 “품성검사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사람”을 삭제

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삭제(안 제76조의2)

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조문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관제적성기관”을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한다.

제76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는 삭제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 ① 철도운영자는 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여객열차에서는 열차의 출발 전 또는 운행 중에 영상 또는 음성(자동안내방송을 포함한다)으로 안내해야 한다. 다만, 열차 내 게시물의 형태로 안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승강장 등 철도시설에서 안내하는 경우에는 여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는 안내와 관련하여 횡수,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1의2, 별표 5, 별표 11,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15조 및 영 제20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u>관제적성기관</u>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76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철도운영자 등은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선로변을 포함한 철도차량 전방의 운행 상황 및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에 관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에 관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무인운전 철도차량	제18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관제적성검사기관</u>----- ----- --. <u><삭 제></u>

2. 다른 대체수단을 통하여 철도차량의 운전조작 상황이 파악 가능한 철도차량

3. 전용철도의 철도차량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상황에 대한 영상이 모두 촬영될 수 있을 것

가. 여객의 대기·승하차 및 이동 상황

나. 철도차량의 진출입 및 운행 상황

다. 삭제

라. 철도시설의 운영 및 현장 상황

2.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이 충격을 받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도 영상기록장치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을 것

<신 설>

제80조의2(여객열차에서의 금지 행위 안내) ① 철도운영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여객열차에서는 열차의 출발 전 또는 운행 중에 영상 또는 음성(자동안내방송을 포함한 다)으로 안내해야 한다. 다만, 열차 내 게시물의 형태로 안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승강장 등 철도시설에서 안내하는 경우에는 여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는 안내와 관련하여 횡수,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제11조 관련)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가. 고속철도차량 나.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가. 전기기관차 나.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3.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가. 전기동차 나.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4. 디젤차량 운전면허	가. 디젤기관차 나. 디젤동차 다. 증기기관차 라.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5. 철도장비 운전면허	가. 철도건설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나 장비 나.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다. 철도·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라.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마. 사고복구용 기중기 바. 입환작업을 위하여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하여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동력차
6. 노면전차 운전면허	노면전차

비고:

1.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는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운전은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중 하나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2. 선로를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의 최고운행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고속철도차량으로 구분한다.
3. 동력장치가 집중되어 있는 철도차량을 기관차, 동력장치가 분산되어 있는 철도차량을 동차로 구분한다.
4. 도로 위에 부설한 레일 위를 주행하는 철도차량은 노면전차로 구분한다.
5.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장비 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소지자는 철도차량 종류

에 관계없이 차량기지 내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철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운전면허의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6.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1. 검사인력

가. 자격기준

등급	자격자	학력 및 경력자
책임 검사 관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적성검사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적성검사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심리학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심리학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적성검사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선임검사관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선임 검사 관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심리학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심리학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적성검사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검사관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검사 관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나. 보유기준

- 1)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이하 이 표에서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1일 50명을 검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책임검사관과 선임검사관 및 검사관은 각각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2) 1일 검사인원이 25명 추가될 때마다 적성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검사관을 1명씩 추가로 보유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

가. 시설기준

- 1) 1일 검사능력 50명(1회 25명) 이상의 검사장(70m² 이상이어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산된 검사장은 제외한다.

나. 장비기준

- 1) 인성(일반성격·안전성향·스트레스), 주의력(복합기능·선택주의력·지속주의력), 인식 및 기억력(시각변별력·공간지각능력·작업기억력), 판단 및 행동력(추론능력·민첩성)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 2) 적성검사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문답형 검사·반응형 검사 등)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3. 업무규정

가. 조직 및 인원

나. 검사 인력의 업무 및 책임

다. 검사체제 및 절차

라.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마. 장비운용·관리계획

바. 자료의 관리·유지

사. 수수료 징수기준

- 아.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성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일반사항

-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개 이상의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항목 등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운전자 등의 수급계획과 운영계획 및 검사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 기관만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의 분산된 5개 이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제37조관련)

1. 운전면허취득 후 실무수습·교육 기준

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미소지자

면 허 종 별	실무수습·교육항목	실무수습·교육시간 또는 거리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선로·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 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속도관측 • 비상시 조치 등	400시간 이상 또는 8,000킬로미터 이상
디젤차량 운전면허		400시간 이상 또는 8,000킬로미터 이상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00시간 이상 또는 6,000킬로미터 이상(단, 무인운전 구간의 경우 2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철도장비운전면허		3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단, 입환작업을 위해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작동하여 동력차를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할 경우 200시 간 이상)
노면전차운전면허		3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나.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면 허 종 별	실무수습·교육항목	실무수습·교육시간 또는 거리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선로·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 관련 규정	200시간 이상 또는 10,000킬로미터 이상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제동기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디젤차량 운전면허	• 속도관측 • 비상시조치 등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2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단, 무인운전 구간의 경우 10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철도장비운전면허		15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노면전차운전면허		15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2. 철도차량 운행을 위한 실무수습·교육 기준

가. 운전업무종사자가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60시간 이상 또는 1,2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철도장비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운전업무종사자가 기기취급방법, 작동원리, 조작방식 등이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때는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연장된 신규 노선이나 이설선로의 경우에는 수습구간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무수습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제75조제10항에 따라 영업시운전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를 활용한 선로견습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 1) 수습구간이 10킬로미터 미만: 1왕복 이상
- 2) 수습구간이 10킬로미터 이상~20킬로미터 미만: 2왕복 이상
- 3) 수습구간이 20킬로미터 이상: 3왕복 이상

라. 철도장비운전면허 취득 후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한 동력차의 운전 실무수습·교육을 2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다른 철도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100시간 이상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일반사항

가. 제1호 및 제2호에서 운전실무수습·교육의 시간은 교육시간, 준비점검시간 및 차량점검시간과 실제운전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나. 실무수습 교육거리는 선로견습, 시운전, 실제 운전거리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방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운전업무종사자들의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제41조제4항 관련)

검사대상		검사 주기	검사항목		불합격기준
			문답형 검사	반응형 검사	
1. 영 제21조제1호의 운전업무종사자	고속철도차량 · 제1종전기차량 · 제2종전기차량 · 디젤차량	정기 검사	· 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 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지속주의 · 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 판단 및 행동력 -민첩성	·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 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노면전차 · 철도장비 운전업무종사자	특별 검사	· 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 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지속주의 · 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 판단 및 행동력 -추론 -민첩성	·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 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2. 영 제21조제2호의 관제업무종사자		정기 검사	· 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 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 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작업기억 · 판단 및 행동력	·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 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민첩성	
	특별 검사	· 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 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 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작업기억 · 판단 및 행동력 -추론 -민첩성	·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 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 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3. 영 제21조제3호 의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 로전환기 및 조 작판 등을 취급 하는 업무를 수 행하는 사람	최초 검사	· 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 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 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작업기억 · 판단 및 행동력 -추론 -민첩성	·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 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 반응형 검사 평가점수 가 30점 미만인 사람
	정기 검사	· 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 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 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작업기억 · 판단 및 행동력 -민첩성	·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 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 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특별 검사	· 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 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 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스트레스	· 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작업기억 · 판단 및 행동력 -추론 -민첩성	· 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	--	-------	--	---

비고:

1. 문답형 검사 판정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한다.
2. 반응형 검사 점수 합계는 70점으로 한다. 다만, 정기검사와 특별검사는 검사 항목별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특별검사의 복합기능(운전) 및 시각변별(판제/신호) 검사는 시뮬레이터 검사기로 시행한다.
4. 안전성향검사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 진단결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당일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재검사 결과를 최종적인 검사결과로 할 수 있다.